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이 승 우*

《 차 례 》

Ⅰ. 시작하며
Ⅱ. 일조권 침해의 법리 구성
Ⅲ. 손해배상청구
Ⅳ. 맺음말

Ⅰ. 시작하며

최근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1] 일조권이란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횡단하여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건물의 고층화·밀집화는 일조를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광선이 차단됨으로써 일조권이 침해되어 생활방해로 생활이익이 침해되면서 그로 인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일조권 침해의 경우 가해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침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가해건물의 철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는 소극적인 침해[4]로 소규모 분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5]

---

* 전남대학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구연창,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경희법학」제21권 제1호, 1986, 28면; "일조권의 법적 보호",「민사법학」제6호, 1986, 96면;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법률신문」제2511호, 1996. 6. 17, 13면.

2)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법행정」, 1998. 11, 26-27면; 김기수,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월간고시」, 1986. 12, 39면.

3) 德本鎭, "判例に あらた日照妨害紛爭", ジュリスト 490號, 29頁.

4) 전창조, "소음·진동 및 일조보호규제법제",「환경법연구」제4권, 1982, 54면.

역사적으로 로마법에 고도금지역권이 있어 오늘날 일조권 침해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6] 독일민법상 환경침해는 임밋시온(Immission)의 방해물로써 적극적 침해(positive Einwirkungen)에 한정되며 일조권 침해와 같은 소극적 침해(negative Einwirkungen)는 일반적으로 독일민법 제906조의 생활방해에서 배제된다.[7] 그러나 인지소유자와 계약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다.[8] 반면에 스위스민법에서는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생활방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사법적 구제도 인정된다.[9] 그러나 수인한도의 한계에 관하여 가해지와 피해지 이용에 따른 요건을 규정하고 토지의 상황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독일과 다르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채광권(採光權)이 인정되어 일조방해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사적 생활방해(private nuisance)가 되어,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신체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또한 일본은 1970년을 전후하여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일조권을 인정하는 학설이 지배적 견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한 많은 판례가 축적되었다.[10]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법제처럼 일조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판례에 의해서 정형화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잦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법원의 판결[11]에 즈음하여 현행법상 일조권 침해의 법리 구성과 사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일조권 침해의 법리 구성

일조권 침해의 법리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법상의 법리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12] 일조권에 관한 법리 구성에 있어서 아직 법규상 일조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5)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한도" 민사판례연구(Ⅳ), 경문사, 1983, 8면.
6) 이진기, "로마법상 고도건축역권과 고도건축금지역권", 한국민사법학회발표논문, 1998. 10, 24면; 구연창,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경희법학』제21권 제1호, 1986, 31면.
7) BGH NJW 1984, 729; BGHZ 95, 307; Palandt/Bassenge, § 903 Rn. 7 ff.; nur für negative Einwirkungen Jauernig, JZ 86, 605.
8) 양삼승, 앞의 논문, 9면; 전경운, 앞의 책, 27면.
9) 안이준, "독일법상의 Immission의 법리",「경희법학」, 제13권 제1호, 45면; 5C.173/2002/mks, Urteil vom 20. Dezember 2002 II. Zivilabteilung 참조.
10) 鈴木傭夫, "練馬區 建築物の建築に係る紛爭の豫防と調整に關する條例" 800號, 129頁.
11) 서울고법 민사19부 2004. 10. 18. 판결; 서울지법 2001가합43521 판결.
12) 구연창,「환경법론」, 법문사, 1985, 566-569면 참조.

일조권 보호에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환경권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함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일조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13] 환경권으로서 일조권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 직접 일조권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14] 헌법상 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15] 이 설은 일반적인 환경권의 발전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설 및 불법행위적 유지청구권설을 비판하면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청구권자의 범위를 지역의 전체 주민에게 확대해서 민중소송(Popularklage)[16]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청구권자의 범위의 확대는 일반 공해와 달리 일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직 확립되지 않는 환경권개념 때문에 법적 의미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17]

2. 불법행위설

이 견해에 의하면 일조권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8] 그러나 일조권 침해여부 판단시 고의・과실이 수인한도를 정하

13) 原田尙彦, "環境權と裁判所の役割", 判例タイムズ 第256号, 6頁.
14)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 1979, 226면; Köndgen, Johannes, Überlegungen zur Fortbildung des Umwelthaftpflichtrechts, UPR 1983, S. 349 ff.; 반대설 -Marburger, Pet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wntlichen Rechts, Das Gutachten Marburgers zum 56. DJT(1986), Bd. I, S. C120; Medicus, Dieter, Zivilrecht und Umweltschutz, JZ 1986, S. 779; von Bar, Christian, Zur Dogmatik des zivilrechtlichen Ausgleichs von Umweltschäden, Karlsruher Forum, 1987, S. 11.
15) 仁藤一・池尾隆良, "環境權の法理", 法律時報 第43卷 第3号, 166頁.
16) 전경운, 앞의 논문, 29면; Marburger, Peter, a.a.O., S. C117.
17) 구연창, 앞의 논문, 35면.
18) 이용우, 앞의 논문, 225면;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36-38면.

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19] 일조권은 햇빛의 향유를 위하여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설정된 일조기준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조방해가 설정된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일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다.[20] 일반적인 환경소송에 있어서 수인한도론의 등장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불법행위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수인한도론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측이 입은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등 가해자측의 제 요인에 지역성 등 기타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시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신수인한도론이 주장되고 있다.[21]

판례에 의하면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린자 상호간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어서 환경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22]"고 판시하고 있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23]"고 판시하여, 일조권의 침해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상린관계설

이 견해에 의하면 일조권 침해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린관계설은 부동산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부동산의 지배나 이용뿐만 아니라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부동산 소유권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인간생활보호를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견해이다.[24] 그러나 이 설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개념 속에 그 목적물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과 인간이 영위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이익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9) 好美淸光, "日照權の法的構成", 特集: 日照權, 1974. 1, 225-226頁.
20) 전경운, 앞의 논문, 30면.
21) 김태봉,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법연구』제8집, 대한민사법학회, 2000, 5면.
22) 대전지법 96가합10960 손해배상(기)판결.
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24)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민사법학』제6호, 한국민사법학회, 1986, 107면.

민법 제217조에 의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연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Positive Einwirkungen)도 문제이지만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소극적인 침해(Negative Einwirkungen)도 문제될 수 있다.[25] 생활방해를 상린관계로 파악하여 침해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민법 제205조에 의해 생활방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6]

4. 일조권설

이 견해에 의하면 일조권은 일조의 향유를 위하여 사회적 통념과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설정된 일조기준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일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본다.[27] 그러나 건축법 제5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일조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일조권에 관련된 사법상 규정이 아니라, 사법상의 일조기준은 이러한 행정상의 일조기준과 달라서 당사자의 사정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수치만으로 일조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28]

5. 검 토

일조권이 환경권 또는 사법상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될 경우 일조권 침해시 개별적인 환경권이나 일조권의 침해로 보고 사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 일조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5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해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25) 구연창, 앞의 논문, 111면;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 1979, 117면; 김태봉, 앞의 논문, 5면;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166면;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법행정」, 1998. 11, 27면; 정권섭, "환경오염과 사법상 구제",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편, 149면; Wolf, Manfred, Sachenrecht, 13. Aufl., Rdnr. 236;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 Aufl., 1986, §1004 Rdnr. 28; BGHZ 88, 344; BGH NJW 1991, 1671 참조.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소극적 침해가 독일민법 제1004조의 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26) 김태봉, 앞의 논문, 6면.

27) 楠本安確, "日照權", ジュリスト第506号, 93頁, 116頁.

28) 好美清光, 前揭論文, 229-230頁.

사법상의 일조권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 의한 이원적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9]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2문[30]에 상응하는 민법 제217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법에 의해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31] 한편 우리 민법 제217조는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2문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극적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2]

Ⅲ. 손해배상청구

일조권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조침해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완공된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이미 축조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지나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조권 침해와 이익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33] 그러므로 일광차단으로 인한 완성된 건축물의 철거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34],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의 요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고는 건물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거주자인 동거가족,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은 물론이고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도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가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매수해서 이주한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예를 들면 전소유자나 거주자가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새로운 소유자나 거주자는

29) 구연창, 앞의 책, 566-569면.
30)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2문 소유자가 이 조에 따라서 그러한 작용을 수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작용이 자기의 토지의 관례상의 이용 또는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다른 토지의 이용자로부터 금전으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 구연창, 앞의 책, 568면;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전지법 96가합10960 손해배상(기)판결.
32) 전창조, "일조침해의 사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한국공해문제연구소, 제2권 제1호, 1975. 5, 38면.
33) 전경운, 앞의 논문, 33면.
3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동일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소유자와 가해자가 일조분쟁의 상태에 있거나 구소유자가 이미 발생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소유자에게 양도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소유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즉 피해자가 일조권 침해와 동시에 손해의 발생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피고는 일반적으로 가해건축물의 주인인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최초 배상책임자는 건축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후 단기간에 소유자에게 인도하므로 최초 배상책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가해건물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광열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취득시를 경계로 책임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해건물의 가격하락 등 계속적으로 발생·존속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거주자의 소유권취득 후부터 그가 방해자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지청구와 달리 건축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는 통상 공사완공 후에 생기는 문제로서 건축업자는 공사완성 직후 배상책임자에게 인도하는 즉시 침해자로서 지위를 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조침해가 건축업자의 잘못된 공사방법에 의한 경우나 공사의 장기화에 의한 경우에 건축업자의 피해자로서의 지위의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건축업자가 독자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건축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업자의 역할과 선택의 여지없는 수분양자(受分讓者)의 입장을 고려하면 건축업자에게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방해건물과 피해건물의 건축업자가 동일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조를 침해하는 가해건물에 대하여 건축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제한은 행정상의 의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개인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35]

일조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인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및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

35) 윤용섭, "일조침해와 손해배상",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 3, 14면.

고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는 가해건축물에 의해서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존부는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가해건축물과 그 음영과의 인과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해악의 의사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있다. 다만 일조권 침해에 의한 구체적 손해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문제 된다. 예컨대 일조권 침해에 의한 토지·건물의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음영에 의한 건강침해 등으로 그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 위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36]

2. 손해배상의 종류와 범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토지·가옥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다.

1) 재산적 손해

⑴ 부동산 가격하락

일조권 침해로 인한 토지·가옥의 가격하락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쉽지 않다. 부동산 감정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격하락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이다. 즉 일조발생 후에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그 차액을 손해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대로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입증이 곤란하다. 결국 같은 조건의 다른 주택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일조피해건물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37]

대법원은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인접 가옥을 응달에 묻히게 하고 가옥내실 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부동산의 시가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하락 사실을 일정할 수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격하락 사실만으로써 곧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를 참조한다[38]"고 판시

36)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토지공법연구』제3집, 1996, 57면.
37) 오세훈, 앞의 논문, 58면.
38)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3나1174 판결.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39]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아파트 신축 전에는 동지(冬至)날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30분의 일조를 받았으나 아파트 신축 후에는 동지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 받게 됐다며 천공조망 차폐율도 32% 증가하는 등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만큼 주택시가가 하락하게 되지만 시가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뤄져 침해 직후 시가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침해발생 전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환경성능 상실률을 토대로 주택가치하락을 계산하여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4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장래의 기대수익상실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에 의한 가옥의 가치하락은 그 주거로서의 사용가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물건의 훼손·파손 등과 같이 그 물리적 존재를 멸실시키지 아니한 일체의 사용가치를 일컫는다고 함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액 역시 그 침해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판례에서 요구하는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아직 수선도 매매도 하지 않은 이상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41]

한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42]로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동을 건축하면서 북쪽 2개의 동을 1차로 분양하고 남쪽에 2개동을 2차로 분양하였는데, 1차와 2차간에 건축법규에 규정된 최소한의 이격거리보다도 짧게 이격시켜 건축함으로써 1차 분양된 아파트 2개동에 입주한 약 300세대의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이 경우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직접손해' 수요자들의 선택시 동 전체에 대한 불리한 가격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간접손해'로 분리하여 각 가구당 재산적 손해액을 산출하였는바, 재판부는 '간접손해'는 일조권 침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액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접손해'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한가구의 가격이 형성되는 데는 동 전체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하자에 관한 선입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39) 대법원 1999. 3. 1. 선고, 98다23850 판결.
40) 서울고법 민사19부 2004. 10. 18. 판결.
41) 오세훈, 앞의 논문, 60면.
42)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임료와 기타 수익저하

한편 임대아파트 등의 임대수익의 저하, 광열비 등의 지출 증대, 치료비 등의 증가, 기타 습기의 증가, 곰팡이의 발생 증가, 식물의 성장 저해, 환자와 유아의 일광욕 기회의 감소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 등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금전으로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결국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신적 손해

일조권 침해는 통상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며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위자료의 액수가 문제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조권 침해 사례의 구체적 특징, 즉 피해의 정도, 지역성, 회피가능성, 가해건물의 건축법 등의 제반규정위반 여부, 가해행위의 피해이익의 사회적 평가 등 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조권 침해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이나, 토지·건물의 가격하락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전보될 수 있다.[43]

3. 수인한도

1) 의의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정도와 관계없이 당연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호간에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할 때 비로소 위법하다.[44] 따라서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침해우려가 있는 때 어느 정도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가 있어 그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 비로소 위법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 수인한도는 피해의 종류와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방지조치의 난이, 지역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45] 수인한도에는 공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에 관해서 「사회공동생활을 운영하는 이상 어느 정도까지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가 있다.[46] 이러한 사고방법은 학설[47]과 판례에

43) 오세훈, 앞의 논문, 62면.
44) 박창현,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 1997, 605면.
45) 양삼승, 앞의 논문, 10면; 전경운, 앞의 논문, 30면.
46)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27頁.

의해 인정된다.[48]

이러한 수인한도는 종래의 개인간의 상린관계나 일조분쟁에 관하여 큰 역할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수인한도의 판단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익형량에 의한 수인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조침해에 관한 판례[49]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이 처럼 수인한도론이 이익형량에 의한 조화와 합리성에 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재판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관에의 백지위임'이라든가, 또 경제의 발전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는 적당하지 않다든가, 또는 수인한도론은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가해자의 면책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50] 그러나 수인한도론에 있어서 이익형량은 결론의 경직화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나타난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판단기준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⑴ 피해정도

일조피해는 동지 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일조량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일조피해를 말한다.[51] 일조량의 측정 장소는 건물의 주요 개구부(開口部)[52]의 일조를 중시하여 피해자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실의 개구부의 1.5m이다. 일조시간은 일반적으로 가해건물에 의해 평균지반면에 통상 동지에 어느 시각에 어느 정도의 음영이 생기는가를 도시해서 피해의 정도를 표시하는 평면일영도(平面日影圖)와 가해건물에 의해 어느 특정일, 특정 시간대에 음영이 비치는 구역에 관해서 도시한 일영시간도(日影時間圖), 피해건물의 입면도에 각 시각마다 생기는 음영을 표시한 도면으로, 이는 피해건물의 각 개구부에서 생기는 음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입면일영도(立面日影圖) 등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다. 판례로는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47) 野村好弘,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加藤編, 387頁;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111頁; 藪重夫, "日照の私法的保護に關する諸問題", 「北大論集」 第25卷 第3号 1頁 以下;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405頁 以下.

48) 奥田昌道 外編, 民法學 6, 81頁 以下.

4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50) 박창현, 앞의 논문, 606면.

51) 대법원 1997. 11. 6. 선고, 97라123판결;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등.

52) 윤혁경, 「건축법・조례해설」, 기문당(서울), 1997, 1면. 주개부구란 '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개구부'를 말한다.

침해의 기준으로서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53] 최근 하급심에서 아파트 1층에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베란다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동지 기준으로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들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54]

⑵ 지역성

일조권 침해지역이 주거지역인가 상업지역인가 또는 공업지역인가에 따라 일조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지역성이 수인의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지역성은 용도지역제와 지역의 실태로 나눌 수 있다.[55] 건축법규는 용도에 따라 각 경우의 용적률과 고도제한[56]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생활보호를 위한 일조권 침해의 판단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57]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조 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하며 지역성을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58]

53)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54) 서울지법 2001가합43521 판결.
55) 五十嵐敬喜, "日照權の理論と裁判", 三省堂(東京), 1980, 27-28頁.
56) 배병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 제4집 제2권, 영남대학교, 1984, 388면.
57) 오세훈,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Ⅳ)」, 대한변호사협회, 1996, 89면.

⑶ 가해방지와 피해회피가능성

가해자측의 피해회피 가능성으로서는 가해건물의 구조, 배치시 일조피해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지, 충분한 배려가 없는 경우에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배려가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 결과 배려가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최선의 방지조치를 했다면 피해의 발생을 경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59]

⑷ 피해건물의 배치와 구조

피해건물의 배치가 일조확보를 위해 고려되었는지 여부도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남측 경계선을 따라 피해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측 토지의 건물에 의한 일조피해는 피해건물로서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하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를 중시할 수는 없지만, 남측 경계선에 충분한 공지를 두고 피해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일조피해에 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60]

⑸ 공법적 규제위반의 유무

건축법 제53조에 의해 건축물은 일조확보를 위해 일정한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시 수인한도 판단에 가해자측의 불리한 요소로 된다.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그 위반여부나 정도는 수인한도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61] 비록 건물신축시에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62]

⑹ 기타

피해건물의 용도, 가해건물의 용도, 선주관계, 당사자 교섭시의 성의, 건축제한협정 위반, 피해자의 건물도 타인에게 일조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 기업의 도산위험, 가해자의 주관적 해의(害意), 건축이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및 조사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즉 민주적 절차의 이행 여부 등도 판단기준이 된다.

58) 대법원 제3부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판결.
59) 淡路剛久, “公害における故意・過失と違法性”, ジュリスト 458号, 376頁.
60) 박창현, 앞의 논문, 612면.
61) 부산고법 1997. 1. 23. 선고, 96나891 판결.
6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참조.

최근 수인한도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일조권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일조권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63]

Ⅳ. 맺음말

도시의 인구집중과 지가상승에 따른 건물의 고층화·밀집화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조권 침해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의 청구가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조권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분쟁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 일조권에 관해서 규정상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조권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조권이란 용어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개별적인 환경권이나 일조권의 침해로서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조의 기준으로서 건물의 높이제한이나 북쪽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 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시 새로운 건축물의 경우 북쪽에는 공지가 생기고, 햇볕이 잘 드는 남향에는 공간이 없어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있고, 일조시간의 판단기준인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주거지역에만 일조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층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렵다. 즉 정남향에서는 이 기준을 따를 수 있지만 다른

6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방향에서는 일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또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는 조정·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손해배상청구,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참 고 문 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5.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85.

_____,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경희법학」 제21권 제1호, 1986.

_____,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제6호, 한국민사법학회, 1986.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 1979.

_____,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 「월간고시」, 1986. 12.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5.

김태봉,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집, 대한민사법학회, 2000.

박창현, "일조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 1997.

배병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영남대학교사회과학」 제4집 제2권, 1984.

심상철,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45집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89.

안이준, "독일법상의 Immission의 법리", 「경희법학」, 제13권 제1호.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한도", 「민사판례연구(Ⅳ)」, 경문사, 1983.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오세훈,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토지공법연구」 제3집, 1996.

_____, "일조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Ⅳ)」, 대한변호사협회, 1996.

_____, "일조권에 관한 사법적 검토", 「법률신문」 제2511호(1996. 6. 17), 13면.

윤용섭, "일조침해와 손해배상",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

윤혁경, 「건축법·조례해설」, 기문당, 1997.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 1979.

이진기, "로마법상 고도건축역권과 고도건축금지역권", 한국민사법학회발표논문, 1998. 10.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1998.

_____,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법행정」, 1998. 11.

전창조, "소음·진동 및 일조보호규제법제", 「환경법연구」 제4권, 1982.

_____, "일조침해의 사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한국공해문제연구소, 제2권 제1호, 1975.

정권섭, "환경오염과 사법상 구제",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편, 149면.

Medicus, Dieter, Zivilrecht und Umweltschutz, JZ 1986.

Köndgen, Johannes, Überlegungen zur Fortbildung des Umwelthaftpflichtrechts, UPR 1983, S. 349 ff.

Marburger, Peter, Ausbau des Individualschutzes gegen Umweltbelastungen als Aufgabe des bürgerlichen und des öffwntlichen Rechts, Das Gutachten Marburgers zum 56. DJT, 1986.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 Aufl., 1986.

von Bar, Christian, Zur Dogmatik des zivilrechtlichen Ausgleichs von Umweltschäden, Karlsruher Forum, 1987.

Wolf, Manfred, Sachenrecht, 13. Aufl., Rdnr. 236.

德本鎭, “判例に あらた日照妨害紛爭”, ジュリスト 제490호.

原田尙彦, “環境權と裁判所の役割”, 判例タイムズ 제256호.

仁藤一・池尾隆良, “環境權の法理”, 法律時報 제43권 제3호.

落合威, “建築禁止を求める日照紛爭の處理實態”, ジュリスト제490호.

好美淸光, “日照權の法的構成, 特輯: 日照權”, 1974.

楠本安確, “日照權”, ジュリスト제506호.

湖海一雄, “日照妨害損害訴訟”, 特輯, 有斐閣(東京), 1974.

宮崎富哉, “日照妨害に關する假處分事件, 判例タムズ 제327호.

篠塚昭次, “日照權新展開”, 法學セミナー, 1972.

五十嵐敬喜, “日照權の理論と裁判”, 三省堂(東京), 1980.

談路剛久, “公害における故意・過失と違法性”, ジュリスト 제458호.

【Zusammenfassung】

Besonnungsrechtsverletzung und Schadensersatz

Lee, Seng Woo

In Wohngebieten trägt eine mögliche Besonnung der Fenster, Balkone, Hofbereiche etc. zum Wohlbefinden der Bewohner bei. Dementsprechend ist im Zuge der Planung eine Betrachtung der Besonnungs- und Beschattungsverhältnisse vorteilhaft. Für die Berechnung und graphische Darstellung der Beschattungsverhältnisse ist eine feine Auflösung der Gebäude nach Lage und Höhe sowie eine Ausrichtung nach Süden notwendig.

Die flächenhafte Darstellung der möglichen Sonnenscheindauer an ausgewählten Tagen zeigt die Beeinflussung der Besonnung durch Gebäude. Die massive Blockrandbebauung führt zu einer intensiven Verschattung in der Höhe des Erdgeschosses. Das betrifft sowohl die Innenhöfe als auch die Straßenräume, so daß innerhalb des Gebietes des Bebauungsplanes an den Fassaden der geplanten Gebäude im Erdgeschoß das Besonnungskriterium von mindestens 4 Stunden pro Tag größtenteils nicht eingehalten wird. Nur an den etwas größeren nichtbebauten Plätzen und einigen Innenhöfen mit bedeutender Flächenausdehnung wird das Kriterium eingehalten. Im Winter weist der 21.12. den niedrigsten Sonnenstand und im Sommer der 21.06. den höchsten Sonnenstand auf. Am östlichen Ende dieser Sonnenbahnen sind die Uhrzeiten des Sonnenaufgangs vermerkt. Schneidet nun eine dieser Sonnenbahnen die Horizontlinie, bedeutet das ab diesem Zeitpunkt eine Verschattung des Standortes des Beobachters bis zum Austritt der Sonnenbahn aus der Horizontlinie.